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405 |
|----------|------|

2016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9. 5.
-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16. 9. 5.
-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6. 9. 8.)
- 안전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안발의 및 의결

II .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1. 제안이유

- 정부 추경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예산 확보,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2.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8조 5,681억원으로
기정예산(8조 1,329억원) 보다 4,352억원 증가함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으로
 - 일반재원의 이전수입은 총 2,344억원으로
보통교부금 1,835억원, 국고보조금 누리과정지원 목적예비비 495억원,
기타이전수입 영중초 교실증축조합지원금 13억원

 - 일반재원의 자체수입은 총 267억원으로
목적사업비 반납, 자산 및 이자 수입 등 증가분임

 - 일반재원의 지방교육채는 총 21억원 감액으로
학교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비 614억원 감액, 교부금 차액보전 593억원 증액함

 - 목적지정재원 1,760억원은
국고보조금 73억원, 특별교부금 1,244억원, 광역자재단체 377억원,
기초자치단체 23억원, 기타 이전수입 40억원임

-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으로
 - 인건비는 교원, 지방공무원, 사립교직원 인원수 변동으로
총 563억원 감액 조정함

 - 경상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111억원 증액함

 - 교육 및 시설사업비는
누리과정지원비 2,243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75억원, 시설비 594억원 등임

○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

- 교육사업비는 1조 7,60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0억원(25.9%) 증가함
 - 이 중 일반재원은 2,448억원 증액되었는 바,
 - 누리과정지원 2,244억원을 포함한 교육복지지원 2,305억원 증액,
 - 마이스터고운영지원 6억원을 포함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억원 증액,
 -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억원 증액됨
 - 교육사업비의 약 72%가 교육복지사업이며, 그 중 누리과정지원이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시설사업비는 6,1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4억원(23.7%) 증가함
 - 이 중 일반재원은 594억원 증액되었는 바,
 - 거여고 설립 지연 등으로 학교신증설은 25억원 감액,
 -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357억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사업비에 497억원 증액,
 - 급식시설 신·증축 93억원을 포함한 급식시설사업비 122억원 증액함

- 우선확정분이 포함된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은
 - 학교신설은 향동유치원 등 7개교 증액분, 거여고 설립지연에 따른 감액분, 반환금이 포함되어 73억원을 감액,
 - 교실증축은 영중초 등 6개교 47억원 증액,
 - 교육지원청 노후시설개선으로 2개 기관 1억원 증액,
 - 학교시설증개축은 총 240억원 증액으로
 - 강당겸체육관사업비로 신내초 등 25개교 157억원과
 - 특별교실 등 기타 증축사업비로 원목초 등 11개교 82억원임
 - 직속기관 노후시설개선으로 7개 기관 13억원 증액,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화장실개선 등 11개 분야 사업비로 총 633억원 증액함

▶ 급식시설비는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로 15억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비로 74억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비로 192억원 등
 총 281억원 증액하였고 2016년 7월 현재 학생식당은 1,327교 중
 70%인 924교에 설치됨

-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3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72억원 반납금 편성

3.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추경예산편성액 | | 기정예산액 (B) | 증감내역 | |
|--------------|-------------|------------------|---------------|------------------|----------------|-------------|
| | | 금액(A) | 비율 | | 증감액(A-B) | 비율(%) |
| 총 규 모 | | 8,568,138 | 100.0% | 8,132,963 | 435,175 | 5.4% |
| 세 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 5,011,605 | 58.5% | 4,646,652 | 364,953 | 7.9% |
| | 자치단체이전수입 | 2,629,815 | 30.7% | 2,589,628 | 40,187 | 1.6% |
| | 기 타 이 전 수 입 | 10,634 | 0.1% | 5,274 | 5,360 | 101.6% |
| | 자 체 수 입 | 175,915 | 2.1% | 149,128 | 26,787 | 18.0% |
| | 지 방 교 육 채 | 421,065 | 4.9% | 423,177 | △2,112 | △0.5% |
| | 전 년 도 이 월 금 | 319,104 | 3.7% | 319,104 | 0 | 0.0% |
| 세 출 | 인 건 비 | 5,248,321 | 61.3% | 5,304,665 | △56,344 | △1.1% |
| | 기 관 운 영 비 | 38,419 | 0.4% | 38,373 | 46 | 0.1% |
| | 학 교 운 영 비 | 717,280 | 8.4% | 706,141 | 11,139 | 1.6% |
| | 교 육 사 업 비 | 1,760,041 | 20.5% | 1,397,954 | 362,087 | 25.9% |
| | 시 설 사 업 비 | 613,251 | 7.2% | 495,781 | 117,470 | 23.7% |
| | 지방교육채및BTL | 183,083 | 2.1% | 182,306 | 777 | 0.4% |
| | 예 비 비 및 기 타 | 7,743 | 0.1% | 7,743 | 0 | 0.0% |

Ⅲ . 검토보고(전문위원 엄지운)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6년 9월 5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1,329억원 대비 5.4%, 4,351억원이 증액된 8조 5,68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추경예산증감내역 | | | |
|--------------|-------------|---------------|-----|---------|--------------------|
| | | 증감 (C=A-B) | 증감률 | 일반재원 |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
| | | | | | |
| 8,568,138 | 8,132,963 | 435,175 | 5.4 | 259,166 | 176,009 |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재원 2,591억 6,600만원(세입재원의 59.6%)과, 목적지정 지원금 1,760억 900만원(40.4%)을 합한 4,351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 **일반재원**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확정·추가교부(1,835억 8,400만원), 국고 목적예비비의 교부(495억 5,900만원), 자체 수입의 증액(267억 8,700만원)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그 용도가 지정·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3)에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을 위해 우선확정된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증액편성 한 것임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 총계 | 일반재원 | | | | |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 | | | |
|---------|---------|---------|--------|--------|--------|----------------|--------------|--------------|------------|
| | 합계 | 이전수입 | 자체수입 | 지방교육채 | 순세계잉여금 | 합계 | 중앙정부 이전수입 | 자치단체 이전수입 | 기타이전 수입 |
| 435,175 | 259,166 | 234,491 | 26,787 | △2,112 | 0 | 176,009 | 131,810 | 40,187 | 4,012 |
| (100.0) | (59.6) | (53.9) | (6.2) | (△0.5) | (0.0) | (40.4) | (30.3) | (9.2) | (0.9) |

〈표 2-3〉 세입재원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감내역 | | | |
|----------|--------------|-------------|---------------|-------|---------|---------|
| | | | 증감 (C=A-B) | 증감률 | 일반재원 | 우선확정 |
| 합계 | 8,568,138 | 8,132,963 | 435,175 | 5.4 | 259,166 | 176,009 |
| 이전수입 | 7,652,054 | 7,241,554 | 410,500 | 5.7 | 234,491 | 176,009 |
| 중앙정부이전수입 | 5,011,605 | 4,646,652 | 364,953 | 7.9 | 233,143 | 131,810 |
| 자치단체이전수입 | 2,629,815 | 2,589,628 | 40,187 | 1.6 | 0 | 40,187 |
| 기타이전수입 | 10,634 | 5,274 | 5,360 | 101.6 | 1,348 | 4,012 |
| 자체수입 | 175,915 | 149,128 | 26,787 | 18.0 | 26,787 | 0 |
| 지방교육채 | 421,065 | 423,177 | △2,112 | △0.5 | △2,112 | 0 |
| 전년도이월금 | 319,104 | 319,104 | 0 | 0.0 | 0 | 0 |

- 세출예산은 90개 세부사업에 대해 4,351억 7,500만원을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바,
 - **인건비**의 경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불용예산액에 대한 감액(△683억 1,900만원), 계약제교원 채용 증가에 따른 증액(118억 4,100만원) 등 △563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 **경상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공립학교 운영비 증액(111억 3,900만원) 등 11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사업비**의 경우, 누리과정 부족분(2,243억 8,100만원), 전담 강사 증가 및 수당 인상으로 인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75억 300만원),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82억 900만원) 등 3,620억 8,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 **시설사업비**는 연도 중 사업추진이 어려운 일부 학교신설(△73억 500만원) 감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663억 8,100만원), 학교 급식환경개선(281억 9,800만원) 증액 등 총 1,174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지방채및BTL상환**은 복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 BTL임대료 7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표 2-4〉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안 | | 기정예산 | | 증감 | | |
|---------------|-----------|-----------|---------|-----------|---------|----------------|--------------|-----|
| | | (A) | 구성비 | (B) | 구성비 | 증감액 (C=A-B) | 증감률 (C/B) | |
| 합 계 | | 8,568,138 | 100.0 | 8,132,963 | 100.0 | 435,175 | 5.4 | |
| 인건비 | 계 | 5,248,321 | 61.3 | 5,304,665 | 65.2 | △56,344 | △1.1 | |
| | 공무원인건비 | 4,223,079 | 49.3 | 4,258,023 | 52.4 | △34,944 | △0.8 | |
| | 사립학교인건비 | 1,025,242 | 12.0 | 1,046,642 | 12.9 | △21,400 | △2.0 | |
| 경상비 | 계 | 755,699 | 8.8 | 744,514 | 9.2 | 11,185 | 1.5 | |
| | 기관운영비 | 38,419 | 0.4 | 38,373 | 0.5 | 46 | 0.1 | |
| | 학교 운영비 | 소 계 | 717,280 | 8.4 | 706,141 | 8.7 | 11,139 | 1.6 |
| | | 공 립 | 654,075 | 0.1 | 642,936 | 0.1 | 11,139 | 1.7 |
| | | 사 립 | 63,205 | 0.0 | 63,205 | 0.0 | 0 | 0.0 |
| 사업비 | 계 | 2,373,292 | 27.7 | 1,893,735 | 23.3 | 479,557 | 25.3 | |
| | 교육사업비 | 1,760,041 | 20.5 | 1,397,954 | 17.2 | 362,087 | 25.9 | |
| | 시설사업비 | 613,251 | 7.2 | 495,781 | 6.1 | 117,470 | 23.7 | |
| 지방채및 BTL상환 | 계 | 183,083 | 2.1 | 182,306 | 2.2 | 777 | 0.4 | |
| | BTL 상환 | 106,550 | 1.2 | 105,773 | 1.3 | 777 | 0.7 | |
| | 지방교육채 | 76,533 | 0.9 | 76,533 | 0.9 | 0 | 0.0 | |
| 예비비 및 기타 | | 7,743 | 0.1 | 7,743 | 0.1 | 0 | 0.0 | |

③ 세입예산관련 검토

1. 이전수입 관련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4조 6,466억 5,200만원) 보다 3,649억 5,300만원(7.8%)을 증액한 5조 116억 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A) | 기정예산(B) | 증 감 | | | |
|-------|-----------|-----------|----------------|--------------|---------|---------|
| | | | 증감액 (C=A-B) | 증감률 (C/B) | 일반재원 | 우선확정 |
| 합 계 | 5,011,605 | 4,646,652 | 364,953 | 7.8 | 233,143 | 131,810 |
| 보통교부금 | 4,813,247 | 4,629,663 | 183,584 | 4.0 | 183,584 | 0 |
| 특별교부금 | 124,494 | 0 | 124,494 | 순증 | 0 | 124,494 |
| 국고보조금 | 73,864 | 16,989 | 56,875 | 334.8 | 49,559 | 7,316 |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4조 8,13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4조 6,296억 6,300만원) 보다 1,835억 8,400만원(4.0%) 증액편성된 것으로

- ① 2016년 3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⁴⁾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산⁵⁾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정교부액(4조 6,296억 6,300만원)보다 △292억 7,900만원이 감액교부되었으나,
- ② 중앙정부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⁶⁾ 시 내국세 예상증가분(9.8조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2항⁷⁾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조원 증액된 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보통교부금 추가교부계획을 통지⁸⁾함에 따라 2,128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35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표 3-2〉 보통교부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확정교부(A) | 예정교부(B) | 추경증감 | | |
|-----------|-----------|-------------------|---------|---------|
| | | 확정교부증감 (C=A-B) | 추가교부(D) | 계(C+D) |
| 4,600,384 | 4,629,663 | △29,279 | 212,863 | 183,584 |

4)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799, 2016.03.22.)

5)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주요 증감내역

* 기준재정수요액 : 1,342억 6,100만원 증

- 표준교육비 적용률 인상(70→75%)에 따른 학교·학급·학생경비 : 730억 8,100만원

- 자율형사립고, 사립외국어고·국제고 재학 사회적 배려 학생의 입학급·수업료 등 반영 : 721억 8,500만원

** 기준재정수입액 : 1,041억 6,100만원 증

- 법정전입금 정산액 증가 : 1,046억 1,400만원

6)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발취, 기획재정부, 2016. 7.2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8)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 2016.08.04.

〈표 3-3〉 보통교부금 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추정항목 | 2016년 확정교부(A) | 2016년 예정교부(B) | 비교증감 (A-B) | |
|---------------------|---------------------------------------|------------------|------------------|---------------|---------|
| 교부총액 ① - ② + ③ | | 4,753,022 | 4,722,924 | 30,098 | |
| | 보통교부금 | 4,600,384 | 4,629,663 | △29,279 | |
| | 교부금 보전 지방채 | 152,638 | 93,261 | 59,377 | |
| 기준 재정 수요 ① | 합 계 | 7,743,815 | 7,609,554 | 134,261 | |
| | 1. 교직원인건비 | 5,406,969 | 5,398,523 | 8,446 | |
| |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 1,173,410 | 1,100,262 | 73,148 | |
| | 3. 교육행정비 | 106,899 | 106,860 | 39 | |
| | 4. 교육복지지원비 | 126,021 | 53,837 | 72,184 | |
| | 5. 학교시설비 | 12,156 | 15,616 | △3,460 | |
| | 6. 유아교육비 | 655,236 | 678,881 | △23,645 | |
| | 7. 방과후학교사업비 | 108,065 | 99,717 | 8,348 | |
| | 8. 재경결함보전 | 107,091 | 109,890 | △2,799 | |
| | 9.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 11,000 | 8,000 | 3,000 | |
| | 10.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9,658 | 9,658 | - | |
| | 1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 23,000 | 24,000 | △1,000 | |
| | 12.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 4,310 | 4,310 | - | |
| 기준 재정 수입 ② | 합 계 | 3,004,388 | 2,900,227 | 104,161 | |
| | 1. 법정 전입금 | 소 계 | 2,572,660 | 2,468,046 | 104,614 |
| | | 지방교육세 | 1,369,667 | 1,291,500 | 78,167 |
| | | 시도세 | 938,502 | 951,196 | △12,694 |
| | | 담배소비세 | 264,491 | 225,350 | 39,141 |
| |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 327,189 | 326,859 | 330 | |
| | 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14,487 | 14,487 | 0 | |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90,052 | 90,835 | △783 | | |
| 정정교부액③ | | 13,600 | 13,600 | 0 | |

〈표 3-4〉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교부액 | 추가교부액 | 최종교부액 | 비고 |
|-----------|---------|-----------|---------------------------------|
| 4,600,384 | 212,863 | 4,813,247 | 전국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총액 : 1,885,824 |

주 1. 교부기준 : 2016년 보통교부금 교부액 비율에 따라 배분(서울시교육청 교부금 비율 : 11.47%)

-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특별교부금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자유학기제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등 219개 사업, 1,244억 9,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⁹⁾에 근거한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고보조금은 총 568억 7,500만원으로
 - ①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으로 교부된 8개 사업 73억 1,600만원과 ② 지방채 이자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495억 5,900만원¹⁰⁾임

9)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0) 2016년도 예산(대한민국 정부) 총칙 제12조의1에 의한 국고 목적예비비 300,000만원 중 서울시교육청 배분액 495억 5,900만원

※ 예산총칙 제12조의1일반회계 예비비 중 300,000,000,000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 자치단체이전수입

- 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액은 2조 6,298억 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2조 5,896억 2,800만원)보다 401억 8,700만원(1.5%)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 3-5〉 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A) | 기정예산(B) | 증 감 | | |
|-----------|-----------|-----------|----------------|--------------|-----------------------|
| | | | 증감액 (C=A-B) | 증감률 (C/B) | 내 역 |
| 합 계 | 2,629,815 | 2,589,628 | 40,187 | 1.5 | |
| 법정이전수입 | 2,585,451 | 2,585,451 | 0 | 0 | |
| 비법정이전수입 | 44,364 | 4,177 | 40,187 | 962.1 |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41,968 | 4,177 | 37,791 | 904.7 | 교육지원사업, 협력사업 전입금 등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2,396 | 0 | 2,396 | 순증 | 복합화시설 및 기타사업 |

- 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분은 모두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¹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된 전입금으로 추경 성립전 우선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임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18개 사업) 전입금 348억 8,800만원, 기타 법령 또는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따른 전입금 29억 300만원 등 총 377억 9,1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 **기초단체전입금**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원한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BTL 원금 및 이자 지원금,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 경비 등 17개 사업 23억 9,600만원이 증액요구 된 것임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경비지원,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도분담금 등 추경 성립전 우선확정된 민간이전수입 및 자치단체이전수입 40억 1,200만원과 영등포 1-4구역 주택개발로 증가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기부 채납한 영중초 교실증축 지원금 13억 4,800만원으로서 총 53억 6,000만원(101.6%)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1,491억 2,800만원) 보다 18.0%, 267억 8,700만원 증액된 1,759억 1,500만원이 편성요청되었음

〈표 3-6〉 자체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감 | | |
|----------|--------------|-------------|----------------|--------------|------------------------|
| | | | 증감액 (C=A-B) | 증감률 (C/B) | 내역 |
| 합 계 | 175,915 | 149,128 | 26,787 | 18.0 | |
| 교수학습활동수입 | 133,270 | 130,402 | 2,868 | 2.2 | 지난년도 수업료 증 |
| 행정활동수입 | 5,146 | 5,301 | △155 | △2.9 |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감 |
| 자 산 수 입 | 8,684 | 753 | 7,931 | 1,053.3 | 토지매각 및 기타유형자산매각 증 |
| 이 자 수 입 | 5,547 | 3,075 | 2,472 | 80.4 | 이자수입 증 |
| 금융자산회수 | 5 | 5 | 0 | 0.0 | |
| 기 타 수 입 | 23,263 | 9,592 | 13,671 | 142.5 | 그 외수입 ^{주1)} 증 |

주 1. 지난년도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지난년도 수업료 28억 6,8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 4분기 수업료 미수납액이 2016년도로 이월되어 지난년도 수업료로 징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직전 회계연도의 경우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 8조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의 단축¹²⁾(회계연도 끝난 후 2월→회계연

12)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금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이하 생략)

도가 끝나는 날)이 시행된 첫해로 회계연도와 4분기 수업료 징수기간¹³⁾ 불일치에 따른 미수납이 과다 발생¹⁴⁾하였던 바, 동일 사유의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산수입**은 기정예산(7억 5,300만원) 보다 79억 3,100만원 (1,053.3%) 증가한 86억 8,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증액분의 99.8%가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인 바, 서소문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서소문 85-2외 1필지, 143.4㎡) 매각수입 29억원, 용산구 서빙고동 4-16(866㎡) 매각수입 46억 2,600만원 등임

○ **이자수입**은 24억 7,2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2,218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3,191억 400만원)으로 인한 여유자금과 전년 동기(1~7월) 대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증가¹⁵⁾로 상반기 중 정기예금의 예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수입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13)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징수방법)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이하생략)
 (별표 1) 초·중등학교수업료 분할 징수표

| 기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상반기 | | 하반기 | |
| 일자 | 3.1.~5.31. | 6.1.~8.31. | 9.1.~11.30. | 12.1.~다음년도 2월말 |

14) 2015회계연도 수업료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수업료 | 130,979 | 133,437 | 130,594 | 11 | 2,830 |

15) 2015~2016년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현황(1~7월)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6년도(A) | 2015년도(B) | 증감 | |
|-------|-----------|-----------|------------|----------|
| | | | 증감액(C=A-B) | 증감률(C/B) |
| 보통교부금 | 3,487,113 | 3,111,340 | 375,773 | 12.1 |
| 법정전입금 | 1,329,109 | 1,087,960 | 241,149 | 22.2 |

- **기타수입**의 경우 증액분 136억 7,100만원의 98.3%는 그 외 수입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각급학교로 교부한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증액요청한 것임

- 학년도 종료(2월) 이전 교육비특별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의 당해연도 반납이 불가능하여 익년도 그 외 수입으로 수납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매년 일정 규모의 그 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 편성액은 4,21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4,231억 7,700만원) 보다 △21억 1,2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교육채 발행규모의 증감은 교육부가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¹⁶⁾ 시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 등의 사유로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감액하여 통보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지방교육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 감 | |
|------------|--------------|-------------|--------------|--------------------|
| | | | 증감액 (A-B) | 주요 증감사유 |
| 합 계 | 421,065 | 423,177 | △2,112 | |
| 학교신설 | 51,013 | 65,500 | △14,487 | 지방자치단체 부담 토지매입비 반영 |
| 교육환경개선비 | 217,414 | 264,416 | △47,002 |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액 감액 |
| 교부금 보전 지방채 | 152,638 | 93,261 | 59,377 | 교부금 차액 보전액 증가 |

- 금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¹⁷⁾를 포함하여 2016년도 말 누적 지방교육채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이나,

16)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799, 2016.03.22.)

17) 2016년 발행예정 지방교육채

(단위 : 백만원, %)

| 발행액 | 상환재원 | 상환방법 | 이율 | 발행(예정)일 |
|---------|-----------|--------------|----------|------------|
| 421,06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2.49(변동) | 2016.10월이후 |

지방교육채의 누적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경기둔화로 세입 여건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상환 시까지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지방교육채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부 등에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 지방교육채 잔액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 지방채 잔액 | | 1,565,665 | 1,188,294 | 373,225 | 311,222 | 238,133 |
| 증감 | 증감액 | 377,371 ^{주1)} | 815,069 | 62,003 | 73,089 | |
| | 증감율 | 31.7 | 218.3 | 19.9 | 30.6 | |

주 1. 2016년도 증감액 3,773억 7,100만원 = 발행액 4,210억 6,500만원 - 상환액 436억 9,400만원

4]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1) 인건비

- **계약제교원인건비**(예산담당관) 사업은 정규 교원의 휴직, 휴가, 파견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고자 정규 교원을 대신할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 하는 사업임

- 이 중 **계약제교원 보수**¹⁸⁾는 11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표 4-1〉 계약제교원 보수 추경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 부 내 역 | 추경증감 |
|-------|---|--------|
| | 합 계 | 11,141 |
| 기간제교사 | 인건비 [3,229,000원×{(230명×12월)+(200명×5월)}] | 12,141 |
| 시간강사 | 강사수당 (△1,000,000,000원×1식) | △1,000 |

- ① 기간제교사의 보수가 기정예산 대비 실 집행인원이 증가되고 최근 2년간 하반기 집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430명분 121억

18) 사업별 설명자료 p 49

- 4,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2016년 3월 이후 휴직교원 증가 등으로 교원인건비는 기정 예산 편성 인원보다 실제 급여지급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기간제교사의 인원수는 증가함에 따라 12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4-2〉 교원 및 기간제교사 보수 예산편성인원

(단위 : 명)

| 구분 | 기정예산 편성인원 | 추경편성인원 | 2016년 보수 집행인원 | | | | | | | | |
|-------|--------------|--------|---------------|--------|--------|--------|--------|--------|--------|--------|--------|
| | | | 증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교원 | 43,377 | 43,245 | △132 | 43,596 | 43,640 | 43,280 | 43,287 | 43,235 | 43,210 | 43,213 | 43,310 |
| 기간제교사 | 3,850 | 4,280 | 430 | 3,734 | 3,685 | 4,064 | 4,201 | 4,304 | 4,304 | 4,258 | 3,743 |

- ② 시간강사의 보수는 매월 평균 4억 1,300만원이 집행되어 연간 집행예상액이 49억 5,600만원인 바, 불용예상액 △10억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계약제교원인건비의 경우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 증액분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례¹⁹⁾가 있는 바, 금번 추경의 의결시점과 회계연도 종료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9) 2015년도 1차 추경편성시 계약제교원인건비(세부사업)의 보수(인건비 과목) 예산에서 86억 1,300만원을 증액 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수(인건비 과목)에서 2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 경상비

- **학교운영비지원**(예산담당관) 중 **교육공무원처우개선비**²⁰⁾는 교육공무원 노조와 단체·임금협약 잠정합의에 따른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10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²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²²⁾ 도입에 따른 교육공무원 대체인건비 6,000만원,
 - ② 각급학교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신설분 10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4-3〉 교육공무원처우개선비 추경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 부 내 역 | 추경증액 |
|----------------------------|--|--------|
| 합 계 | | 10,614 |
| 교육공무원 대체인건비 | 근로시간면제자 대체 인건비(2,000,000원×10명×3월) | 60 |
|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수당 인상 및 신설 | 소 계 | 10,554 |
| | 명절휴가보전금(150,000원×15,991명×2회) | 4,797 |
| | 명절휴가비보전금 인상에 따른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부대경비(4,797,300,000원×20%) | 959 |
| | 정기상여금 신설(250,000원×15,991명×1회) | 3,998 |
| | 정기상여금 신설에 따른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부대경비 (3,997,750,000원×20%) | 780 |

20) 사업별 설명자료 p.71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2) 근로시간면제제도 :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임

- 인상되는 처우개선 수당은 명절휴가보전금으로 연 40만원에서 연 7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되고, 신설하고자 하는 수당은 정기상여금으로 하반기분 25만원을 신설할 계획임
- 신설되는 정기상여금은 추경 편성 후 집행할 수 있는 하반기분만 증액 요청하고 있으나, 명절휴가비보전금은 추경 편성 후 2016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추석 외에 2016년 2월 설 명절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잠정 합의한 시점이 2016년 7월 11일임에도 2016년도 2월분 설 명절분을 소급하여 포함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계획²³⁾(2016.3.)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됨

2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823(2016.03.03.)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계획 p5
 (명절휴가보전금) 현행 사도 평균 연 40만원을 '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되 우선 '16년에는 연 70만원으로 인상 지급
 ※국회 '16년 예산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16년 2월부터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3) 교육사업비

가. 누리과정지원

- 추가경정예산안 중 **누리과정지원**²⁴⁾은 기정예산(3,838억 100만원)보다 2,243억 8,1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 전액(6,081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4-4〉 누리과정 소요예산 및 편성 내역

인원 및 총소요액 기준일 : 2016. 7. 1.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인원 | 총소요액 (A) | 기정예산액 | | | | 미편성액 (C=A-B) | 3회추경 예산증액 (D) | 3회추경 이후 부족 예산액 (F=C-D) |
|------|---------|-------------|--------------------|----------|-----------------|-----------------|-----------------|---------------------|------------------------------------|
| | | | 계 (B=①+ ②+③) | 본예산 ① | 1회추경 증액 ② | 2회추경 증액 ③ | | | |
| 합계 | 195,741 | 608,182 | 383,801 | - | 252,124 | 131,676 | 224,381 | 224,381 | - |
| 보육료 | 105,825 | 364,461 | 231,196 | - | 151,274 | 79,922 | 133,264 | 133,264 | - |
| 유아학비 | 89,916 | 243,721 | 152,604 | - | 100,850 | 51,754 | 91,117 | 91,117 | - |

- 2016년도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소요예산을 확보한 바,

- 2016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 교육청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만3~5세아 보육료(이하 보육료)’ 소요액 3,807억 600만원 전액을 미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원) 대상 아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만3~5세아 유아학비(이하 유아학비)’ 편성액 전액을

24) 사업별 설명자료 p.421~424

감액(△2,521억 2,400만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2,521억 2,400만원)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 회계연도 개시 이후, 누리과정지원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교직원 인건비 미지급, 운영비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유치원 등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2차례의 추경²⁵⁾을 통해 총 3,838억 100만원, 7.4개월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편성하였음
 - 금번 추경으로 미편성된 4.6개월분의 보육료(1,332억 6,400만원) 및 유아학비(911억 1,700만원)를 증액함으로써 소요액 전액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 증액분 2,243억 8,100만원은 추경 일반재원(2,591억 6,600만원)의 86.5%에 달하는 바, 일반재원 중 확정·추가교부(예정)된 보통교부금(1,835억 8,400만원) 및 국고목적예비비(495억 5,900만원)²⁶⁾의 반영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누리과정의 재원부담이나 재원부족 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제도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재원으로 인한 문제는 차년도에도 동일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정적인 재원확보나 부담방안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5)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2016.02.05. 확정)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2016.06.27. 확정)

26)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7848(2016.09.06.)

나. 학비지원

- **학비지원**²⁷⁾(참여협력담당관) 사업은 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 국제중 등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1.)으로 교육급여수급자가 증가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대상자는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학비지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 교육급여 지원²⁸⁾ 대상자 보다 학비지원대상자²⁹⁾가 증가하게 된 바,
-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교육급여지원³⁰⁾(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에서 △126억 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학비지원 예산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4-5〉 학비지원 추경 증감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세세부사업명 | 추경예산안(A) | | 기정예산(B) | | 추경 증감(A-B) | |
|-----------------------|----------|--------|---------|--------|------------|---------|
|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 학비지원 | 52,849 | 36,277 | 46,311 | 23,593 | 6,538 | 12,684 |
| 교육급여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 22,497 | 39,270 | 29,080 | 51,954 | △6,538 | △12,684 |

27) 사업별 설명자료 p.112

28) 교육급여지원 지원대상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가구 학생)

29) 학비지원 지원대상자(기준) : 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국제중 등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의 학생

30) 교육급여지원사업 추경편성현황(사업별 설명자료 p.109)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정예산 | 추경증감 | 추경예산 | 비고 |
|---------|--------|---------|--------|--|
| 계 | 62,723 | △8,104 | 54,619 | 보조금반환 증액사유 : 교육급여수급자 추계인원(98,201명) 기준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의 실제 지원 인원(56,538명) 차이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환금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환 |
| 기타급여 | 10,769 | - | 10,769 | |
| 입학금및수업료 | 51,954 | △12,684 | 39,270 | |
| 보조금반환 | - | 4,579 | 4,579 | |

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 **초등돌봄교실 운영**³¹⁾(초등교육과) 사업은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7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증액분 17억 8,000만원, ② 돌봄교실 설치·운영비 48억 9,000만원, ③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 8억 2,500만원, ④ 중앙노동위원회 강제이행금³²⁾ 800만원 등 총 7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 초등돌봄교실운영 추경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 부 내 역 | 추경증액 |
|---------------|--|-------|
| 합 계 | | 7,503 |
| 시간제 돌봄전담사 인건비 | 소 계 | 1,780 |
| | 정원 증원(13,257,000원×58명) | 769 |
| | 명절휴가보전금(120,000원×819명) | 99 |
| | 처우개선수당(1,090,000원×837명) | 912 |
| 돌봄교실 설치·운영 | 소 계 | 4,890 |
| | 겸용교실 설치비(15,000,000원×20실) | 300 |
| | 전용교실 ¹ 운영비(2,420,000원×560실) | 1,355 |
| | 겸용교실 ² 운영비(674,000원×882실) | 595 |
| | 방과후 연계형돌봄교실 ³ 운영비(12,000,000원×220실) | 2,640 |
| 저소득층 자녀 지원 | 급·간식비(750,000원×1,100명) | 825 |
| 중앙노동위원회 강제이행금 | 강제이행금(8,400,000원×1식) | 8 |

주1. 전용교실 : 교당 1실을 원칙으로 오후·저녁·아침·오전돌봄 등 모든 형태의 돌봄교실을 운영
 오후돌봄(방과후 13:00~17:00), 저녁돌봄(17:00~22:00), 아침돌봄(수업일 06:30~09:00), 오전돌봄(토요일 자율휴업일 방학 등 08:00~13:00)

주2. 겸용교실 : 오전에는 학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오후부터는 돌봄을 위한 공간(교실)로 사용(오후돌봄 중심)

주3.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3~6학년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에 숙제 및 독서 등 개인 자율 활동을 진행

31) 사업별 설명자료 p. 449

32) 초등돌봄전담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명령(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영(현재 소송진행 중)

라. 기타 기금적립

○ **기타 기금적립**³³⁾(교육재정과) 사업은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금 적립액 8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³⁴⁾에 따라 지난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실제 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 중 기금 적립금(8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³⁵⁾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출하였음
- 동 조례 제3조³⁶⁾에 따라 금번 기금 적립금(82억 800만원)은 중구 서소문동 85-2, 용산구 서빙고동 4-16 등 총 32필지의 매각대금으로 전액 공유재산 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출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33) 사업별 설명자료 p.163

34)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표 4-7〉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세출과목

(단위 : 백만원)

|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 추경예산안 |
|----|------|--------|------|----------------|----------|-------|
| 교육 | 교육일반 | 교육행정일반 | 재무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460 기금적립 | 8,208 |

- 다만, 이 적립금이 기금운용계획서 상에서는 출연금 또는 전입금으로 혼용되어 있는 바, 출연금, 기타회계 전입금을 혼용하여 기재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조례 제3조³⁷⁾의 기금 조성재원 중 제2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세출예산과목의 ‘기금 적립금’의 용어도 일치시킬 필요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시설사업비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6,132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4,957억 8,100만원) 대비 23.7%, 1,174억 7,000 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이는 추경 재원(4,351억 7,500만원) 의 27.0%에 해당함

37)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표 4-8〉 시설사업비 재원 내역

(단위 : 백만원, %)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감액 (C=A-B =D+E) | 추경증감 | | | |
|--------------|-------------|------------------------|------------------|------------------|----------------|------------------|
| | | | 계 (D) | 일반재원 | | 우선확정 (E) |
| | | | | 자체재원 | 반납액 | |
| 613,251 | 495,781 | 117,470 (100,0) | 59,485 (50.6) | 57,689 (49.1) | 1,796 (1.5) | 57,985 (49.4) |

※ ()안은 구성비율임

-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경을 통한 시설사업비의 증감분을 비교해 보면 2012년(2,094억 900만원)의 56.1% 수준에 불과한 바, 교육재정 여건 상 시설사업비 편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나 학생의 안전 및 교수학습여건과 직결된 만큼 환경개선이 지체되지 않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9〉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2016~2012)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정(본)예산 (A) | 시설사업비 ① | 구성비 (①/A) | 추경증감 (B) | 시설사업비 증감 ② | 구성비 (②/B) |
|------|----------------|------------|--------------|-------------|---------------|--------------|
| 2016 | 8,132,963 | 495,781 | 6.1 | 435,175 | 117,470 | 27.0 |
| 2015 | 7,690,092 | 381,357 | 5.0 | 431,841 | 104,749 | 24.3 |
| 2014 | 7,439,129 | 267,414 | 3.6 | 233,600 | △37,507 | △16.1 |
| 2013 | 7,368,893 | 335,618 | 4.6 | 433,747 | 200,953 | 46.3 |
| 2012 | 7,116,287 | 542,721 | 7.6 | 546,373 | 209,409 | 38.3 |

-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월률³⁸⁾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금번

38) 2015년도 예산편성별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 본예산 | | | 추경 증감 | | | 간주처리 증감 | | |
|---------|--------|------|---------|--------|------|---------|--------|------|
| 편성액 | 이월액 | | 증감액 | 이월액 | | 증감액 | 이월액 | |
| | | 이월률 | | | 이월률 | | | 이월률 |
| 381,357 | 93,046 | 24.4 | 104,750 | 80,402 | 76.8 | 34,308 | 28,388 | 82.7 |

추경으로 증액된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전년도(추경확정일 : 2015. 7.10)에 비해 사업 추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0〉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감내역 | | |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일반재원 | 우선확정 | |
| 합 계 | | 613,251 | 495,781 | 117,470 | 23.7 | 59,485 | 57,985 | |
| 학교 신증설 | 계 | 191,181 | 193,750 | △2,569 | △1.3 | △2,569 | 0 | |
| | 학교신설 | 174,517 | 181,822 | △7,305 | △4.0 | △7,305 | 0 | |
| | 교실증축 | 16,664 | 11,928 | 4,736 | 39.7 | 4,736 | 0 | |
| 시 설 개 선 | 계 | 422,070 | 302,031 | 120,039 | 39.7 | 62,054 | 57,985 | |
| | 일 반 시 설 | 소 계 | 361,541 | 269,700 | 91,841 | 34.1 | 49,775 | 42,066 |
| | | 학교시설 증개축 | 53,508 | 29,506 | 24,002 | 81.3 | 12,579 | 11,423 |
| | |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 299,847 | 233,466 | 66,381 | 28.4 | 35,738 | 30,643 |
| | | 본청시설 관리 | 353 | 353 | 0 | 0.0 | 0 | 0 |
| | |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 2,723 | 2,591 | 132 | 5.1 | 132 | 0 |
| | | 직속기관 시설관리 | 5,110 | 3,784 | 1,326 | 35.0 | 1,326 | 0 |
| | 급 식 시 설 | 소 계 | 60,529 | 32,331 | 28,198 | 87.2 | 12,279 | 15,919 |
| |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 8,065 | 639 | 7,426 | 1162.1 | 1,418 | 6,008 |
| | | 노후조리기구 교체및확충 | 13,310 | 11,753 | 1,557 | 13.2 | 1,557 | 0 |
|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 | 915 | 915 | 0 | 0 | 0 | 0 | |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 | 38,239 | 19,024 | 19,215 | 101.0 | 9,304 | 9,911 | |

가. 학교신증설(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 학교신증설(학교지원과)은 기정예산(1,937억 5,000만원) 보다

△25억 6,900만원 감액된 1,911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신설**³⁹⁾의 경우 향동유치원 등 7개교(유 3교, 초 3교, 중 1교)의 건설비 및 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32억 5,200만원, 우면지구 내 중학교 설립비용 정산액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고, 거여교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건설비 △205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1,818억 2,200만원) 보다 총 △73억 500만원을 감액편성요청한 것임

-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내 설립예정인 거여고 신설사업은 기정 예산에 편성된 건설비 △205억 8,500만원을 전액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 당초, 2016년 3월 개교를 위해 2014년도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설 예정부지 내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액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2015년도 역시 동일 사유로 전액 미집행하였음
- 2015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1억 3,000만원, 건설비 5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 중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추경 시 전액 감액조정하였음
-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21억 2,700만원, 건설비 205억 8,500만원을 재차 편성하였으나, 2016년 8월 현재 군부대의 이

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건설비 전액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신설 사업의 특성 상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금번 추경에서 토지매입비는 조정하지 않은 바,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강동구 강일초의 과대과밀해소를 위해 설립 추진중인 미사리초는 당초 29학급(초등학교 25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 규모로 설립 예정이었으나, 강일1지구의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따라 유아수가 급증하여 병설유치원을 8학급으로 증설하고, 건설비 잔여분 및 부지조성공사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총 106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 4-11〉 미사리초 신설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총공사비 | 2015년도 편성액 | 2016년도 편성액 | |
|--------|------------|------------|--------|
| | | 본예산액 | 추경증감 |
| 20,000 | 3,356 | 6,000 | 10,644 |

- 그러나, 미사리초가 2017년 3월 개교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공사비 166억 4,400만원 중 본예산에 60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는 잔여분 106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예산투입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 뿐 아니라 개교 후 공사 진행의 우려가 있음

- 교육재정의 한정성으로 인해 예산의 일부 편성은 불가피할 것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집행시기를 고려한 적정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실증축**⁴⁰⁾은 6개교(초 5교, 중 1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 등의 부족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비 4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천왕중의 교실증축은 천왕1,2개발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 급증(2015년도 741명→2020년도 1,010명⁴¹⁾)에 대비하여 8실의 보통교실 (수직)증축비 20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기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⁴²⁾에 따르면 설계에서 준공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됨에도 금번 추경에 교실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편성요청한 바,

- 현재부터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비 전액이 편성요청된 만큼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0) 사업별 설명자료 p.141

41) 천왕중학교 교실 증축 검토(안)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254, 2016. 2.16.)

4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986, 2016. 2. 5)

〈표 4-12〉 학교신증설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급별 | 청별 | 학교명 | 개교일 | 규모 (학급수) | 추경증감액 | 예산증감 세부내역 |
|--------------|------|---------------------|----------|-----------------|---------|------------------|
| 합 계 | | | | | △2,569 | |
| 학교신설 계 (9개교) | | | | | △7,305 | |
| 유 | 남부 | 항동유 | 2018.09. | 9(특1) | 270 | 건설비 270 |
| 유 | 성동광진 | 경일초병설유 | 2017.03. | 3 | 369 | 건설비 369 |
| 유 | 성동광진 | 중광초병설유 | 2017.03. | 3 | 369 | 건설비 369 |
| 초 | 남부 | 구심초 | 2017.03. | 41(병유4) | 1,400 | 건설비 1,400 |
| 초 | 강동송파 | 고이초 | 2019.09. | 37(특1) | 100 |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 |
| 초 | 강동송파 | 미사리초 | 2017.03. | 33 (특1, 병유8) | 10,644 | 건설비 10,644 |
| 중 | 강동송파 | 가락일중 | 2019.03. | 25(특수1) | 100 |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 |
| 고 | 강동송파 | 거여고 | 2019.03. | 36(특3) | △20,585 | 건설비 △20,585 |
| 기타 | 강남서초 | 우면지구 중학교 설립비용 정산 | | | 28 | 설립비용 정산 28 |
| 교실증축 계 (6개교) | | | | | 4,736 | |
| 초 | 남부 | 영중초 | | 5 | 1,348 | 건설비 1,348 |
| 초 | 남부 | 천왕초 | | 6 | 1,060 | 건설비 1,060 |
| 초 | 중부 | 덕수초 | | 3 | 69 | 건설비 69 |
| 초 | 강남서초 | 대도초 | | 16 | 152 | 건설비 152 |
| 초 | 강남서초 | 원촌초 | | 9 | 107 | 건설비 107 |
| 중 | 남부 | 천왕중 | | 8 | 2,000 | 건설비 2,000 |

나.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증개축**(교육시설안전과)은 학교 내 강당 겸 체육관, 특별 교실 등을 설치하고자 535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정 예산(295억 600만원) 보다 240억 200만원(81.3%) 증액된 바, 이중 일반재원의 증액은 125억 7,900만원임

〈표 4-13〉 학교시설증개축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 감 | | | | 증감률 |
|----------|--------------|-------------|--------|--------|--------|--------|-------|
| | | | 계 | 일반재원 | 우선확정 | | |
| | | | | | 특별교부금 | 자치체전입금 | |
| 합 계 | 53,508 | 29,506 | 24,002 | 12,579 | 11,373 | 50 | 81.3 |
| 강당 겸 체육관 | 38,384 | 22,628 | 15,756 | 10,858 | 4,898 | 0 | 69.6 |
| 기타증축 | 15,124 | 6,878 | 8,246 | 1,721 | 6,475 | 50 | 119.9 |

- **강당 겸 체육관**⁴³⁾은 총 25개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위해 157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경에서는 일반재원으로 설계가 완료된 9개교의 1차년도 시설비 100억 5,800만원과 신규 추진되는 11개교의 설계비 7억 7,000만원 등 108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바,

·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1교 1체육관 확보를

43) 사업별 설명자료 p.167

목표로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⁴⁴⁾’을 수립하였음에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해소를 위해 기정예산의 47.9%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나타내고자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에도 2014~2015년도 대상사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외부재원 유치 등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거나 실제 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맞는 연도별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학초 등 4개교의 증축사업은 시설비 48억 9,800만원이 우선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음

〈표 4-14〉 학교 강당 겸 체육관 보유 현황 및 증축대상

2016. 8월 현재

(단위 : 교)

| 학교수 | 보유 | 증축대상 | 증축제외 |
|-------|-------|--------------------|--------------------|
| 1,332 | 1,066 | 150 ^{주1)} | 125 ^{주2)} |

주 1. 증축대상(150교) : 150교 중 9교는 기 확보되어 있지만 규모 협소 등 재설치 대상

주 2. 증축제외(125교) : 도시계획, 부지협소, 재개발 등으로 설치 어려움

44)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변경(교육시설과-3721, 2013. 6.10.)

〈표 4-15〉 강당 겸 체육관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청별 | 학교명 | 총소요액 | 기편성액 | 추경 편성액 | 향후 소요액 | 추경예산편성 사유 |
|----------|------|--------|-------|-----------|-----------|---------------------------------|
| 합계(25개교) | | 60,629 | 4,341 | 15,756 | 40,532 | |
| 동부 | 신내초 | 2,345 | 70 | 1,123 | 1,152 | 2014년 추진계획 |
| | 동원중 | 2,247 | 0 | 70 | 2,177 | 2015년 추진계획 |
| 서부 | 성원초 | 2,273 | 70 | 1,087 | 1,116 | 2014년 추진계획(식당 병행증축) |
| 남부 | 정심초 | 2,345 | 70 | 1,123 | 1,152 | 2014년 추진계획 |
| | 영남중 | 2,526 | 0 | 70 | 2,456 | 2015년 추진계획 |
| 북부 | 방학초 | 1,570 | 670 | 900 | 0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주1)} 선정(특교) |
| | 상월초 | 2,064 | 0 | 70 | 1,994 | 2015년 추진계획 |
| | 신화초 | 2,345 | 0 | 70 | 2,275 | 2015년 추진계획 |
| | 월천초 | 2,345 | 70 | 1,123 | 1,152 | 2014년 추진계획 |
| 강동송파 | 신가초 | 2,526 | 70 | 1,213 | 1,243 | 2014년 추진계획(식당 병행증축) |
| | 오금중 | 2,526 | 70 | 1,213 | 1,243 | 2014년 추진계획(식당 병행증축) |
| | 천일중 | 2,526 | 0 | 70 | 2,456 | 2015년 추진계획 |
| 강서양천 | 월촌초 | 3,167 | 1,266 | 1,901 | 0 | 외부재원(특교) |
| | 신화중 | 2,526 | 0 | 70 | 2,456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선정 |
| | 명덕여고 | 2,042 | 0 | 816 | 1,226 | 외부재원(특교) |
| 강남서초 | 대현초 | 2,345 | 0 | 70 | 2,275 | 2015년 추진계획 |
| | 압구정초 | 2,345 | 0 | 70 | 2,275 | 2015년 추진계획 |
| | 우암초 | 2,063 | 70 | 982 | 1,011 | 2014년 추진계획(식당 병행증축) |
| | 신사중 | 2,247 | 70 | 1,074 | 1,103 | 2014년 추진계획 |
| | 압구정중 | 2,247 | 0 | 70 | 2,177 | 2015년 추진계획 |
| | 언북중 | 2,345 | 0 | 70 | 2,275 | 2015년 추진계획 |
| 동작관악 | 난곡초 | 2,345 | 0 | 70 | 2,275 | 2015년 추진계획 |
| | 신봉초 | 2,345 | 70 | 1,123 | 1,152 | 2014년 추진계획 |
| 성동광진 | 동자초 | 4,248 | 0 | 1,281 | 2,967 | 외부재원(특교) |
| 성북강북 | 수송초 | 2,725 | 1,775 | 30 | 920 | 복합화사업 |

주 1.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학교수업시간 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보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대응투자 30:20:50, 단 지자체 및 교육청 부담비율 조정가능)이 함께 건립한 생활체육시설

○ **기타증축**⁴⁵⁾은 11개 기관의 특별교실, 자기주도학습실 등의 증축을 위해 82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 일반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5개교의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17억 2,1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은 5개교 및 1개 기관의 건설비 64억 7,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개교의 건설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4-16〉 기타증축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청별 | 학교명 | 사업내역 | 총사업비 | 기편성액 | 추경 편성액 | 향후 편성액 | 비고 (재원) |
|---------------|------------|----------------|--------|-------|-----------|-----------|------------|
| 합계(11기관, 12건) | | | 11,678 | 971 | 8,246 | 2,461 | |
| 동부 | 원목초 | 특별교실 증축(내부비품비) | 977 | 935 | 42 | 0 | |
| | 동대부고 | 자기주도학습실 증축 | 1,061 | 0 | 1,061 | 0 | 특교 |
| 서부 | 신북초 | 체육관기자재실 증축 | 158 | 0 | 158 | 0 | 특교 |
| | 은빛초 | 특별교실 증축 | 1,145 | 0 | 572 | 573 | |
| | 은평고 | 특별교실 증축 | 798 | 36 | 332 | 430 | 특교 |
| 북부 | 방학초 | 시청각실 등 특별실 증축 | 760 | 0 | 760 | 0 | |
| 강서양천 | 월촌초 | 연결통로,태양광발전 | 297 | 0 | 297 | 0 | |
| | 신목중 | 특별교실 증축 | 1,282 | 0 | 1,282 | 0 | 특교 |
| | | 다목적 체육교실 증축 | 50 | 0 | 50 | 0 | 서울시 전입금 |
| | 신목고 | 특별교실 증축(설계비) | 50 | 0 | 50 | 0 | |
| | 세민정보고 | 특별교실 증축 | 600 | 0 | 600 | 0 | 특교 |
| 성동광진 | 제2창의인성센터구축 | 4,500 | 0 | 3,042 | 1,458 | 특교 | |

45) 사업별 설명자료 p.197

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 **노후시설개선**⁴⁶⁾은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11개 분야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2,334억 6,600만원) 보다 663억 8,100만원 증액된 2,998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4-1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 감 | | | | 증감률 |
|--------------|-------------|-----------------------------------|----------------------------------|------------------|------------------|------|
| | | 계 (A-B) | 일반재원 | 우선확정 | | |
| | | | | 특별교부금 | 지사체전입금 | |
| 299,847 | 233,466 | 66,381 (100.0) ^{주 2)} | 35,738 ^{주 1)} (53.8) | 12,360 (18.6) | 18,283 (27.6) | 28.4 |

주 1. 반납금 14억 5,600만원 포함

주 2. () 안은 구성비율임

- 추경 증액예산 663억 8,100만원 중 일반재원의 규모는 357억 3,8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 기타사업은 129억 4,700만원(노후시설개선 일반재원의 36.2%)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특히 학교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94억 800만원을 편성한 바,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정밀점검 결과 및 정기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위해 44억 3,600만원, 내진보강·경량칸막이 시설물 철거 등 기타 위험시설의 해소를 위해 22억 7,200만원, 우레탄 트랙개보수비 27억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46) 사업별 설명자료 p.211

〈표 4-18〉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단위사업 | 대상학교수 | 추경증감 | | | |
|---------|-------|--------|--------|-------|--------|
| | | 계 | 일반재원 | | 우선확정 |
| | | | 구성비 | | |
| 계 | 633 | 66,381 | 35,738 | 100.0 | 30,643 |
| 화장실개선 | 170 | 15,015 | 544 | 1.5 | 14,471 |
| 전기시설개선 | 13 | 978 | 719 | 2.0 | 259 |
| 냉난방개선 | 70 | 12,076 | 8,545 | 23.9 | 3,531 |
| 창호개선 | 22 | 5,641 | 3,070 | 8.6 | 2,571 |
| 외벽개선 | 24 | 6,280 | 4,903 | 13.7 | 1,377 |
| 방수공사 | 35 | 3,259 | 3,059 | 8.6 | 200 |
| 바닥개선 | 11 | 2,712 | 664 | 1.9 | 2,048 |
| 도장공사 | 3 | △140 | △140 | △0.4 | 0 |
| 외부환경개선 | 13 | 1,153 | 407 | 1.1 | 746 |
| 기타사업 | 262 | 18,387 | 12,947 | 36.2 | 5,440 |
| 장애인편의시설 | 10 | 1,020 | 1,020 | 2.9 | 0 |

- 우레탄 트랙개보수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완료된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 135개교에서 한국산업 표준(KS)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대상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원한 42개교에 22억 7,000만원(예비비 11억 3,500만원, 특별교부금 11억 3,500만원⁴⁷⁾)을 우선 지원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2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7)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교부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065, 2016.08.16.)

- 다만,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요청한 44개교의 경우,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KS기준⁴⁸⁾이 마련될 때까지 교체가 중단⁴⁹⁾되었음
- 아울러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30여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요청되는 등 일부 미해결 과제가 있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9〉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예산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 구분 | 교체대상 | | 총소요액 ^{주1)} (A) | 기집행액 (B=b'+b") | | 추경증감액 (C) | 향후소요액 (D=A-B-C) |
|----|------------|-----------|----------------------------|-------------------|---------------|--------------|--------------------|
| | 우레탄 운동장 | 우레탄 트랙 | | 예비비 (b') | 특별교부금 (b") | | |
| 합계 | 11 | 124 | 8,765 | 1,135 | 1,135 | 2,700 | 3,795 |
| 초 | 1 | 45 | 2,346 | 664 | 398 | 277 | 1,007 |
| 중 | 6 | 44 | 3,626 | 256 | 563 | 1,406 | 1,401 |
| 고 | 3 | 35 | 2,648 | 215 | 174 | 872 | 1,387 |
| 특수 | 1 | - | 145 | | | 145 | |

주 1. 총소요액은 우레탄 교체방법(마사토 시공, 친환경우레탄 재시공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냉난방개선은 85억 4,500만원(일반재원의 23.9%)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연도 내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시행된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내용연수⁵⁰⁾가 경과하여 늘어난 소요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48)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레탄 운동장·트랙 등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새로운 우레탄 체육시설 KS 기준을 마련 중임(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6.8.16. 부분발췌)

49) 2016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회의(2016.8.3., 교육부 교육시설과)

50) 냉난방기 내용연수 : 9년(조달청고시 제2014-12호, 2014. 5.23.)

- 노후시설개선 중 추경 성립전 우선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306억 4,300만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123억 6,000만원)과 서울시의 비법정전출금(182억 8,300만원)임
- 특별교부금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⁵¹⁾에 따른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안평초 바닥개선 등 38개 사업, 123억 6,0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어 금회 반영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된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100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34억 3,100만원, 특별교육지원사업 41억 2,200만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4억원, 재난대비수용시설 지정교 내진보강 3억 3,000만원, 총 182억 8,3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임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라. 학교급식환경개선

- **학교급식환경개선**(체육건강과)은 HACCP⁵²⁾시스템에 부합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605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323억 3,100만원) 보다 281억 9,800만원 증액한 것이며, 일반재원 증액분은 122억 7,900만원임

〈표 4-20〉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 감 | | | | 증감률 (C/B) |
|------------------|--------------|-------------|--------------|--------|-------|-------|--------------|
| | | | 계 (C=B-A) | 일반재원 | 우선확정 | | |
| | | | | | 특별교부금 | 자체전입금 | |
| 합 계 | 60,529 | 32,331 | 28,198 | 12,279 | 9,911 | 6,008 | 87.2 |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 8,065 | 639 | 7,426 | 1,418 | 0 | 6,008 | 1,162.1 |
| 노후조리기구 교체및확충 | 13,310 | 11,753 | 1,557 | 1,557 | 0 | 0 | 13.2 |
|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 915 | 915 | 0 | 0 | 0 | 0 | 0 |
|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 38,239 | 19,024 | 19,215 | 9,304 | 9,911 | 0 | 101.0 |

- **노후급식시설개보수**⁵³⁾는 141교의 급식용 보일러·배관교체, 덩웨이터교체 등 노후급식시설개선비로 71억 7,200만원(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전입금 60억 800만원 포함)을 증액하고, 2교⁵⁴⁾에 대한 사업조정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연도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52)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53) 사업별 설명자료 p.978

54) 사업조정 내역

- 주몽학교 급식실개선 2,400만원 : 사업변경(노후급식시설개보수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 장월초 조리실 바닥 배수로 및 누수공사 1,900만원 : 서울시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감액

2,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⁵⁵⁾은 급식실 전면 개보수 및 학생식당 신증축 11개교의 노후 조리기구 교체를 위해 15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⁵⁶⁾은 22개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설계비 및 건축비 192억 1,500만원을 증액(특별교부금 99억 1,100만원 포함)하여 382억 3,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18.3% 증가한 바,
 - 그동안 재원의 한정성으로 누적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표 4-21〉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 편성 내역(2014~2016)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예산총액 | | 본예산 (A) | 추경증감 (B) | 간주처리증감 (C) | 비고 |
|------|---------|-------------|------------|-------------|---------------|----|
| | (A+B+C) | 전년대비 증감률 | | | | |
| 2016 | 38,239 | 118.3 | 19,024 | 19,215 | 0 | |
| 2015 | 17,519 | 18.3 | 4,563 | 9,423 | 3,533 | |
| 2014 | 14,808 | | 4,857 | 6,344 | 3,607 | |

55) 사업별 설명자료 p.988

56) 사업별 설명자료 p.991

〈표 4-22〉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청별 | 학교명 | 총소요액 | 기확보액 | 추경 증감액 | 향후 소요액 | 비고 |
|------------------|-----|--------|-------|-----------|-----------|-------------------------|
| 합 계(22개교) | | 24,928 | 2,853 | 19,215 | 2,860 | |
| 급식실 및 학생식당(17개교) | | | | | | |
| 동부 | 태릉고 | 557 | 247 | 310 | | 특별교부금 부족액 |
| 서부 | 안산초 | 1,525 | | 1,525 | | |
| 서부 | 덕산중 | 1,510 | | 1,510 | | 특별교부금 및 일반재원 |
| 서부 | 신수중 | 1,055 | | 1,055 | | |
| 서부 | 신연중 | 1,159 | | 1,159 | | |
| 서부 | 중암중 | 1,368 | | 70 | 1,298 | |
| 남부 | 정심초 | 1,187 | | 1,187 | | |
| 남부 | 오류중 | 1,607 | | 1,607 | | 특별교부금 |
| 남부 | 동일중 | 1,279 | 1,545 | △266 | | 총사업비(기확보액) 감액 |
| 북부 | 창일초 | 1,363 | | 1,363 | | 특별교부금 |
| 북부 | 방학중 | 1,145 | | 1,145 | | 특별교부금 및 일반재원 |
| 강동송파 | 명덕초 | 1,550 | | 1,550 | | 특별교부금 |
| 강동송파 | 잠실중 | 1,617 | | 55 | 1,562 | |
| 강서양천 | 치현초 | 1,356 | | 1,356 | | 특별교부금 |
| 강서양천 | 신화중 | 360 | 60 | 300 | | |
| 강서양천 | 영일고 | 1,844 | | 1,844 | | 특별교부금 |
| 강남서초 | 개일초 | 1,456 | | 1,456 | | |
| 급식실(5개교) | | | | | | |
| 남부 | 영서초 | 0 | 60 | △60 | | 단독 증축→체육관 병행 증축으로 변경 |
| 남부 | 문일중 | 615 | | 615 | | 특별교부금 및 일반재원 |
| 강서양천 | 양천초 | 1,082 | 801 | 281 | | 특별교부금 부족액 |
| 강남서초 | 서울고 | 672 | 140 | 532 | | |
| 동작관악 | 원신초 | 605 | | 605 | | |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 | | 16 | | 16 | | 집행잔액 반납 |

5) 2015년도 불용사업 중 필수사업

- 불용사업 중 필수사업은 2015년도 중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업, 또는 집행잔액 중 교부처에 반환하지 않고 사용(이월집행)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14건, 36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됨

〈표 4-23〉 2015년도 집행잔액 중 필수사업 증액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 세부사업 | 2015년도 | | 2016년도 추경증감 | 내역 | 비고 (재원) |
|---------|---------------|--------|-------|----------------------|---|------------|
| | | 교부액 | 집행잔액 | | | |
| 합 | 계 | 44,897 | 3,638 | 3,638 | | |
| 정보화담당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 563 | 43 | 4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구축 및 운영(나이스시스템자원증설) | 특교부금 |
| 교육혁신과 | 스마트교육지원 | 3,400 | 69 | 69 | 서울미래학교설립(서울미래학교 수업지원형 기자재 구입 등) | 특교부금 |
| 교육혁신과 |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 854 | 244 | 244 | 자사고 입학전형제도 개선(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제도 운영) | 특교부금 |
| 중교육과 | 특색교육과정 운영 | 140 | 13 | 13 | 교육과정개선 포럼 | 특교부금 |
| 중교육과 | 특색교육과정 운영 | 5,670 | 24 | 24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진학상담프로그램 개발) | 특교부금 |
| 평교육과 |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 383 | 150 | 150 |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 장학금 지원 | 특교부금 |
| 학생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지원 | 400 | 36 | 36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선도지원(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운영 및 업무보조자 인건비) | 특교부금 |
| 학생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지원 | 97 | 30 | 30 | 범죄예방환경설계시범학교 운영 | 특교부금 |
| 학생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지원 | 30 | 30 | 30 | 녹색어머니회 안전물품지원 | 지원금(농협) |
| 학생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지원 | 135 | 14 | 14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선도지원(보호관찰학생교사 1:1 멘토링) | 특교부금 |
| 학생생활교육과 | 학생상담활동지원 | 489 | 349 | 349 | 특화Wee센터 건립 및 운영 | 특교부금 |
| 체건강과 | 학교보건관리 | 300 | 51 | 51 | 학생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 | 특교부금 |
| 교육시설안전과 |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 1,295 | 644 | 644 ^{주1)} | 청운중 등 2교 위험시설 보강공사 | 특교부금 |
| 교육시설안전과 |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 31,141 | 1,941 | 1,941 ^{주2)} | 불암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6교 교육환경개선 | 특교부금 |

주 1. 2015년도 특별교부금 1억 이상 잔액 교육부 사용승인신청 반영분

주 2. 2013.9.~2015.10. 특별교부금 1억 미만 잔액 자체집행계획 수립분

(2) 목적지정 지원금(우선확정)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그 용도가 지정·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우선확정된 목적지정 지원금은 293건, 1,760억 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재원(4,351억 7,500만원)의 40.4%에 해당함
-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목적지정 지원금은 회계연도 개시부터 2016년 7월 31까지의 우선확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을 위해 우선확정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⁵⁷⁾에 의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지난 2차례 추경이 누리과정에 한정된 추경으로 긴급 편성됨에 따라 우선확정분은 금회 추경에 일괄반영한것임

〈표 4-24〉 목적지정 지원금 재원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재 원 | | 건수 | 확정액 |
|----------|-----------|-----|---------|
| 합 계 | | 293 | 176,009 |
| 중앙정부이전수입 | 국고보조금 | 8 | 7,316 |
| | 특별교부금 | 219 | 124,494 |
| 자치단체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30 | 37,791 |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17 | 2,396 |
|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 | 15 | 389 |
| | 전입금 | 4 | 3,623 |

57)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20억원 이상 우선확정 사업은 학교흡연예방교육 외 15개 사업 1,137억 4,600만원임
- **학교흡연예방교육**⁵⁸⁾(체육건강과)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건강증진 및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흡연 예방프로그램지원 등 사업비 42억 9,4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임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⁵⁹⁾(진로직업교육과)은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재학생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192억 2,1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비는 교육부가 연도 중 대응투자 비율을 변경(교육부:교육청=3:7→4.5:5.5)함에 따라 당초 예상 지원규모 보다 증액되어 교부된 바, 교육청 부담분으로 편성하였던 기정예산 296억 7,700만원 중 △61억 8,500만원을 금회 추경 시 감액조정 요청하고 있음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⁶⁰⁾(교육혁신과)은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⁶¹⁾에 따라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과의 확산을 위해 시행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383교, 82억 2,400만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지원(5교, 5,500만원) 총 82억 7,900만원이 우선 확정되어 편성한 것임

58) 사업별 설명자료 p.938

59) 사업별 설명자료 p.863

60) 사업별 설명자료 p.316

6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6521호, 2015.9.15. 시행 2016.1.1.>

-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⁶²⁾(중등교육과)는 초·중등 영어 수업시수 증가로 인한 전문 영어인력 확충 및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정착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67억 2,000만원 교부되어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4:6 대응투자⁶³⁾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교육청 부담분인 148억 6,300만원은 본예산에 기 편성되었음
 - 그러나, 교육부가 지원인원을 교육청 편성인원(700명)보다 100명 적은 600명으로 통보함에 따라 당초 교육청이 편성한 인건비 중 약 1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금번 추경에 감액 조정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사업부서가 교육재정의 현실을 공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⁶⁴⁾(중등교육과)는 일반고(187교)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집중과정 운영, 학교 특성·여건에 따른 중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67억 1,900만원을 우선 확정하여 증액한 것임
-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⁶⁵⁾ 구축⁶⁶⁾(교육시설안전과)은 문화예술

62) 사업별 설명자료 p.574

63)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특별교부금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인건비 소요액 중 법정부담금 및 연차수당을 제외한 2,800만원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1인당 연간 인건비 소요액 3,200만원의 35%를 지원함

64) 사업별 설명자료 p.541

65)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사업내용
 · 위치 : 동명초 별관동 및 별관동 유희부지(성동구 마장로 소재)
 · 규모 : 총면적 2,307.2㎡(별관동 907.2㎡, 증축 1,400㎡)
 · 사업기간 : 2016. 1월~2017. 9월
 · 총 사업비 : 45억원

66) 사업별 설명자료 p.209

기반 창의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 및 수요 증대에 따라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에 이어 동부권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교육부에 요청하여 교부된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30억 4,200만원을 우선 확정하여 증액한 것임

〈표 4-25〉 성립전 우선확정 내역(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순 | 재원 | 세부사업 | 사업내역 | 우선확정액 |
|----|-----------|--------------|--|--------|
| 1 | 국고보조금 | 학교보건관리 | 학교흡연예방교육 - 흡연예방교육센터운영 및 금연 실천학교운영 등 | 4,294 |
| 2 | 특별교부금 | 학교시설증개축 | 지역현안수요 녹천중 외 46교 | 20,691 |
| 3 | 특별교부금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19,221 |
| 4 | 특별교부금 | 학교급식환경개선 | 지역현안수요 덕산중 외 7개 사업 | 9,911 |
| 5 | 특별교부금 | 교육과정운영 | 자유학기제운영지원 | 8,279 |
| 6 | 특별교부금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 6,720 |
| 7 | 특별교부금 | 특색교육과정운영 | 일반고교육역량강화 | 6,719 |
| 8 | 특별교부금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입학전형지원 - 수능시험시행지원 및 대입전형 시스템운영 | 3,749 |
| 9 | 특별교부금 | 학교시설증개축 |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축 | 3,042 |
| 10 | 특별교부금 |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 EBS수능강의운영분담금 | 3,009 |
| 11 | 특별교부금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 | 2,546 |
| 12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 10,000 |
| 13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학교급식환경개선 | 노후급식시설개보수 | 6,008 |
| 14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냉난방시설개선 | 3,431 |
| 15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 학습준비물지원(1학기) | 2,771 |
| 16 | 전입금 | 학력평가관리 |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 | 3,355 |

2. 세출예산 감액 관련

□ 금번 추경의 감액 편성사업은 14개 사업 △856억 2,5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감액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8개 사업(△835억 4,300만원)이며, 총 감액 편성액(△856억 2,500만원)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26〉 감액편성 사업현황(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내역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감 | | 소관부서 |
|-----------|---------------|---------------|--------------|-------------|---------|-------|-------------|
| | | | | | (A-B) | 비율 | |
| 인건비 |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 인건비재정결 함보조 | 932,785 | 954,185 | △21,400 | △2.2 | 학교지원과 |
| | 교원인건비 | 보수 | 2,805,652 | 2,817,848 | △12,196 | △0.4 | 예산담당관 |
| | 교원인건비 | 법정부담금 | 582,157 | 594,157 | △12,000 | △2.0 | 예산담당관 |
| | 지방공무원 인건비 | 보수 | 348,300 | 362,395 | △14,095 | △3.9 | 예산담당관 |
| | 지방공무원 인건비 | 법정부담금 | 72,104 | 78,504 | △6,400 | △8.2 | 예산담당관 |
| | 계약제교원 인건비 | 퇴직금관리 | 10,433 | 12,474 | △2,041 | △16.4 | 총무과 |
| 교육 사업비 | 교육급여 지원 | 교육급여 지원 | 54,619 | 62,723 | △8,140 | △12.9 | 참여협력 담당관 |
| 시설 사업비 | 학교신증설 | 학교신설 | 174,516 | 181,822 | △7,306 | △4.0 | 학교지원과 |

(1) 인건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⁶⁷⁾(학교지원과) 사업은 기정예산(9,541억

67) 사업별 설명자료 p.149

8,500만원) 대비 2.2%인 △214억원을 감액한 9,327억 8,5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2016학년도 교원 정원 조정으로 기정예산 편성인원 대비 250명이 감소⁶⁸⁾하였고, 퇴직·휴직 및 명예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보수 차액 발생 등으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이 감소하여 △214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표 4-27〉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기정예산 | 추경예산안 | | 2016년 인건비재정결함 집행현황 | | | | | | | | |
|-----------|-----------|---------|--------------------|--------|--------|--------|--------|--------|---------|--------|---------|
| | | 증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소계 |
| 1,046,642 | 1,025,242 | △21,400 | 134,136 | 74,843 | 72,226 | 70,982 | 75,444 | 54,826 | 153,727 | 87,245 | 723,429 |

- **교원인건비 중 보수및법정부담금⁶⁹⁾**(예산담당관) 사업은 기정예산(각각 2조 8,178억 4,800만원, 5,941억 5,700만원) 대비 각각 △0.4%(△121억 9,600만원), △2.0%(△120억원)을 감액하여 각각 2조 8,056억 5,200만원과 5,821억 5,700만원을 편성한 바,
- 보수는 ① 교원의 휴직, 퇴직 등으로 기정예산 편성인원(43,377명) 대비 7월까지 평균집행인원(43,245명) 감소(△132명)분 △44억

68)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소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감 |
|----|--------|--------|------|
| 정원 | 16,114 | 16,364 | △250 |

69) 사업별 설명자료 p.60

4,600만원, ②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잔액 △18억 4,200만원 ,
 ③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한 하반기 명절휴가비 △59억 800만원
 등 총 △12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⁷⁰⁾과 같이 금번 추경에서도 교원보수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결산시점에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정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8〉 교원 보수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기정 예산 | 추경예산안 | | 2016년 보수 집행 | | | | | | | |
|----|-----------|-----------|---------|-------------|---------|---------|---------|---------|---------|---------|---------|
| | | | 증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인원 | 43,377 | 43,245 | △132 | 43,596 | 43,640 | 43,280 | 43,287 | 43,235 | 43,210 | 43,213 | 43,310 |
| 금액 | 2,817,848 | 2,805,652 | △12,196 | 260,863 | 284,724 | 187,782 | 190,951 | 192,341 | 191,003 | 416,053 | 192,045 |

- 법정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은 명예퇴직교원의 경력 감소와 퇴직인원 감소에 따라 소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20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표 4-29〉 공립 교원 명예퇴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5년도 | 증감 |
|---------|-------|--------|------|
| 명예퇴직 인원 | 1,128 | 1,470 | △342 |

70) 2015년도 1차 추경 편성 시 교원인건비(세부사업) 예산을 △409억 3,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271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전체 집행잔액의 20.2%를 차지하며 오히려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98억 200만원)보다 증가됨

- **지방공무원인건비 중 보수 및 법정부담금**⁷¹⁾(예산담당관) 사업은
 기정예산(각각 3,623억 9,500만원, 785억 400만원) 대비 각각
 △3.9%(△140억 9,500만원), △8.2%(△64억원)을 감액하여
 각각 3,483억원과 721억 400만원을 편성한 바,
 - **보수**는 ① 기정예산 편성인원(6,793명) 대비 실 집행인원(6,767명)
 감소분(△26명) △10억 9,400만원, ② 주2회 가정의 날 및 연
 가사용 축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실집행액 감소
 분 △93억원, ③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한 정근수당 및 하반기
 명절휴가비 △37억 100만원 등 총 △140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표 4-30〉 지방공무원 보수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기정 예산 | 추경예산안 | 2016년 보수 집행 | | | | | | | | |
|----|----------|---------|-------------|--------|--------|--------|--------|--------|--------|--------|--------|
| | | | 증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인원 | 6,793 | 6,767 | △26 | 6,793 | 6,802 | 6,786 | 6,777 | 6,768 | 6,756 | 6,684 | 6,676 |
| 금액 | 362,395 | 348,300 | △14,095 | 31,390 | 35,007 | 23,349 | 23,197 | 43,776 | 23,309 | 34,065 | 23,306 |

- **법정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은 명예퇴직자 감소와 기타 퇴직인원
 감소에 따라 소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64억원을 감액
 편성함

〈표 4-3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6년 상반기 | 2015년도 상반기 | 증 감 |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인원 | 23 | 49 | △26 |

71) 사업별 설명자료 p.62

- **계약제교원인건비 중 퇴직금관리**⁷²⁾(예산담당관) 사업은 기정예산 (124억 7,500만원) 대비 △16.4%(△20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104억 3,300만원을 편성한 바,
-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제교원의 특성상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1일 퇴직자가 9월 1일 퇴직자보다 많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퇴직금이 집행되는 추이에 따라 104억 3,3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⁷³⁾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표 4-32〉 계약제교원 퇴직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상반기(6월말)(A) | 하반기(12월말)(B) | 계(A+B) |
|--------|-------------|----------------------|--------|
| 2016년도 | 6,879 | 1,344 ^{주1)} | 8,223 |
| 2015년도 | 7,058 | 1,115 | 8,173 |
| 2014년도 | 7,418 | 438 | 7,856 |
| 2013년도 | 4,638 | 1,350 | 5,988 |

주1. 2016년도 하반기 집행액은 2016.9.2. 기준임

72) 사업별 설명자료 p.58

73) 2015년도 1차 추경편성시 계약제교원인건비(세부사업)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액 조정하지 않아 2015회계연도 계약제교원인건비(세부사업) 결산 집행잔액(84억 9,500만원) 중 학교회계전출금과목(퇴직금 포함)의 집행잔액(59억 8,600만원)이 70.5%를 차지함

3.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 관련

- 2014년 4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⁷⁴⁾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도 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⁷⁵⁾
- 또한,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함
 -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⁷⁶⁾에 따라 생략된 것임

74)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6)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자 : 2016. 9. 8.(목) (제1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오승록 부위원장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 별첨

◇ 첨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1부.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405 |
|----------|------------|

2016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심사·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부 :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끝.

[붙임]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내역
(2016. 9. 8.)

□ 총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 추경예산안 | 심사·의결내역 | 증감액 |
|----|---------------|---------------|-----|
| 세입 | 8,568,138,020 | 8,568,138,020 | 0 |
| 세출 | 8,568,138,020 | 8,568,138,020 | 0 |

□ 세출 감액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 추경예산안 | 심사·의결내역 | 감액 | 비고 |
|------------|-------------|-------------|------------|---------------------------------|
|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 12,545,073 | 12,478,023 | △67,050 | 실천적인성프로그램 운영(학교로찾아가는 세대간공감교실운영) |
| 학교환경위생관리 | 1,099,669 | 1,093,869 | △5,800 | 깨끗한 학교만들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 1,0574,911 | 8,274,911 | △2,300,000 | 기타기금적립 |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299,847,079 | 299,727,079 | △120,000 | 학교공간리모델링 |
| 계 | 324,066,732 | 321,573,882 | △2,492,850 | |

□ 세출 증액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 추경예산안 | 심사·의결내역 | 증액 | 비고 |
|-------|-----------|------------|-----------|----|
| 예비비 | 7,742,838 | 10,235,688 | 2,492,850 | |
| 계 | 7,742,838 | 10,235,688 | 2,492,850 | |